

청주지방법원 2024. 10. 16 선고 2022가합50472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고 1. A

2. B

3. C

4. D

5. E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준길

피고 1. F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신연우

2. G 주식회사

3. H

피고 2, 3의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충규

4. I

변론 종결 2024. 8. 21.

판결 선고 2024. 10. 16.

주 문

1. 피고 G 주식회사, 피고 I은 연대하여

가. 원고 A에게 52,600,000원 및 그중 36,600,000원에 대하여는 2021. 12. 3.부터, 나머지

16,000,000원에 대하여는 2022. 1. 19.부터 각 2022. 3. 2.까지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2024.

10. 16.까지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 나. 원고 C에게 142,050,000원 및 그중 25,000,000원에 대하여는 2021. 11. 30.부터, 37,980,000원에 대하여는 2021. 12. 20.부터, 39,300,000원에 대하여는 2022. 1. 14.부터, 39,770,000원에 대하여는 2022. 1. 25.부터 각 2022. 3. 2.까지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2024. 10. 16.까지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 다. 원고 D에게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11. 30.부터 2022. 3. 2.까지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2024. 10. 16.까지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 라. 원고 E에게 39,49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12. 16.부터 2022. 3. 2.까지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2024. 10. 16.까지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 각 지급하라.
2. 피고 G 주식회사는 원고 B에게 47,044,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12. 29.부터 2022. 3. 2.까지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2024. 10. 16.까지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별지 1 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피고 F 주식회사와 피고 G 주식회사 사이에 2021. 11. 2. 체결된 매매계약을 348,629,32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4. 피고 F 주식회사는 원고 E에게 45,761,877원, 원고 B에게 54,431,841원, 원고 C에게 164,270,604원, 원고 A에게 60,944,693원, 원고 D에게 23,220,273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5. 원고들의 피고 H에 대한 청구 및 피고 G 주식회사, 피고 I, 피고 F 주식회사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6. 소송비용 중 원고들과 피고 G 주식회사, 피고 I 사이에서 생긴 부분은 위 피고 G 주식회사와 피고 I이, 원고들과 피고 H 사이에서 생긴 부분은 원고들이, 원고들과 피고 F 주식회사 사이에 생긴 부분의 1/5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 F 주식회사가 각 부담한다.
7. 제1, 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1. 피고 G 주식회사, 피고 H, 피고 I은 연대하여,

가. 원고 A에게 52,600,000원 및 그중 36,600,000원에 대하여는 2021. 9. 3.부터, 16,000,000에 대하여는 2021. 10. 19.부터 각 이 사건 소장부분 송달일까지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나. 원고 C에게 142,050,000원 및 그중 62,980,000원에 대하여는 2021. 10. 7.부터, 39,300,000원에 대하여는 2021. 10. 15.부터, 39,770,000원에 대하여는 2021. 10. 29.부터 각 이 사건 소장부분 송달일까지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다. 원고 D에게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8. 30.부터 이 사건 소장부분 송달일까지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라. 원고 E에게 39,49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9. 16.부터 이 사건 소장부분 송달일까지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피고 G 주식회사와 피고 H은 연대하여 원고 B에게 47,044,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9.

29.부터 이 사건 소장부분 송달일까지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1) 3. 피고 F 주식회사와 피고 G 주식회사 사이의 별지 1 목록 기재 부동산 및

별지 2 목록 기재 (공장)영업권에 관하여 2021. 11. 2.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4. 피고 F 주식회사는 피고 G 주식회사에게 각 별지 1.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청주지방법원 보은등기소 2021. 11. 5. 접수 제10152호로 접수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별지 2 목록 기재 (공장)영업권에 관하여 2021. 11. 2. 공장등록명의변경등록의 말소등록절차를 각 이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G 주식회사의 전자어음 발행 및 부도 경위

피고 G 주식회사(이하 '피고 G'이라고만 한다)는 2021. 8. 30.부터 2021. 10. 29.까지 아래와 같은 9개의 전자어음(이하 '이 사건 전자어음'이라 한다)을 발행하였고, 피고 I은 같은 날 이 사건 전자어음에 배서하였으며, 아래와 같이 각 어음만기일에 각 지급거절을 이유로 부도처리가 이루어졌고, 현재 원고들이 아래와 같이 지급 거절된 이 사건 전자어음을 소지하고 있다.

(표 삽입을 위한 여백)

1	J	39,490,000원	2021. 9. 16.	2021. 12. 16.	원고 E
2	K	47,044,000원	2021. 9. 29.	2021. 12. 29.	원고 B
3	L	25,000,000원	2021. 08. 30.	2021. 11. 30.	원고 C
4	M	37,980,000원	2021. 10. 7.	2021. 12. 20.	원고 C
5	N	39,300,000원	2021. 10. 15.	2022. 1. 14.	원고 C
6	O	39,770,000원	2021. 10. 29.	2022. 1. 25.	원고 C
7	P	36,600,000원	2021. 9. 3.	2021. 12. 3.	원고 A
8	Q	16,000,000원	2021. 10. 19.	2022. 1. 19.	원고 A
9	L	20,000,000원	2021. 8. 30.	2021. 11. 30.	원고 D
합계	301,184,000				

나. 피고 G과 피고 F 주식회사 사이의 매매계약 체결 및 소유권 이전

1) 피고 G과 피고 F 주식회사(이하 '피고 F'이라고만 한다)는 2021. 11. 2. 피고 G 소유의 별지 1 목록 기재 각 부동산 및 피고 H 소유의 별지 3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포함하여 피고 G이 운영하던 공장 및 설비 일체를 피고 F에게 매매대금 30억 원에 일괄하여 양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2) 피고 F은 2021. 11. 5. 이 사건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피고 G 소유의 별지 1 목록 기재 각 부동산 및 피고 H 소유의 별지 3 목록 1. 2. 6.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같은 날 피고 H 소유의 별지 3 목록 3. 4. 5. 7.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21. 11. 2.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각 마쳤다.

다. 별지 1 목록 기재 각 부동산 및 별지 3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의 매매계약 당시 현황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피고 G 소유의 별지 1 목록 기재 각 부동산 및 피고 H 소유의 별지 3 목록 기재 각 부동산들에는 아래와 같이 공동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다.

1	2008. 12. 5.	576,000,000	중소기업은행
22) 별지 3 부동산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U 토지는 제외하고 나머지 토지들에만 설정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2008. 12. 31.	1,000,000,000	R 주식회사
33) 이는 G 소유의 별지 2 부동산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만 설정되어 있었다.	2021. 9. 13.	300,000,000	S
4	2021. 9. 30.	800,000,000	T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 18 내지 20호증, 을가제1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고 G, H, I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1) 어음금 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고 G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들은 피고 G에 대하여 각 어음금을 지급할 것을 구하고 있으므로 살피건대, 원고들이 피고 G이 발행한 합계 301,184,000원의 전자어음을 소지하고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피고 G은 발행인으로서 위 각 어음금 및 이에 대하여 만기일부터의 법정이자 및 지연손해금을 원고들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들은 피고 G에 대해 이 사건 전자어음의 각 발행일부터의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을 구하고 있으나, 어음소지인에 대한 법정이자 및 지연손해금은 만기일부터 발생하는 것이고(어음법 제28조 제2항, 어음법 제48조 제1항 참조), 달리 별도의 이자약정에 대한 주장·입증이 없는 이상 이 부분 청구는 받아들이기 어렵다.

나) 이에 대하여 위 피고는 피고에 대한 어음금 채권이 소멸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어음법상 배서인과 발행인에 대한 청구권은 거절증서 작성일 또는 만기일로부터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것인데(어음법 제70조), 위 각 어음의 만기일이 2021. 11. 30.부터 2022. 1. 19.까지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한편 원고들이 각 만기일(거절증서

작성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기 전인 2022. 2. 14. 위 피고에 대하여 어음금 채권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한바, 어음금 채권을 구하는 소를 기간 내에 적법하게 제기한 이상 소멸시효는 중단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위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나) 피고 I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1) 원고 B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은 피고 G, 피고 I에 대하여 각 어음금을 지급할 것을 구하고 있으므로 살피건대, 위 원고들이 피고 G이 발행하고 피고 I이 배서한 어음금 합계 254,140,000원의 전자어음을 소지하고 있는 사실, 이 사건 전자어음들이 발행일에 지급거절된 사실 및 만기일에 위 어음이 지급거절되어 전자어음상 부도처리된 사실, 이와 같이 부도처리된 전자어음을 원고들이 전자어음관리기관으로부터 받아 소지하고 있음(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제 12조, 동법 시행령 제10조)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I은 발행인인 피고 G과 연대하여(어음법 제47조 제1항에 의하면 발행인과 배서인은 합동책임을 부담하나, 원고들이 연대하여 지급할 것을 구하고 있다) 원고 B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 대해 이 사건 전자어음에 따른 어음금 및 이에 대한 만기일 이후의 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이에 대하여 위 피고는 피고들에 대한 어음금 채권이 소멸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어음법상 배서인과 발행인에 대한 청구권은 만기일로부터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것인데(어음법 제70조), 위 각 어음의 만기일이 2021. 11. 30.부터 2022. 1. 19.까지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한편 원고들이 2022. 2. 14. 위 피고들에 대하여 어음금 채권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한바, 어음금 채권을 구하는 소를 기간 내에 적법하게 제기한 이상 소멸시효는 중단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위 피고들의 소멸시효 항변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2) 불법행위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들은 피고 G, 피고 I, 피고 H이 공모하여 어음이 만기에 지급되지 아니하리라는 점을 예견하였음에도 이를 발행하였다고 주장하나,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 G이 발행한 위 어음들이 원고들의 주장과 같이 발행 당시부터 지급의 의사 없이 발행된 것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설령 위와 같은 기망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행위가 피고 G에 대하여 대가를 지급받고 어음을 수취한 이들에

대하여 불법행위가 됨은 별론으로 하고, 발행인인 피고 G 또는 배서인인 피고 I의 위와 같은 발행 및 배서 행위가 어음의 최종 소지인인 원고들에 대한 불법행위가 된다고 보기도 어렵다4)). 따라서 원고들의 피고 G, 피고 I, 피고 H에 대한 불법행위청구는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소결 그렇다면 피고 G, 피고 I은 연대하여 원고 A에게 위 어음금 52,600,000원 및 그중 36,600,000원에 대하여는 만기일인 2021. 12. 3.부터, 나머지 16,000,000원에 대하여는 만기일인 2022. 1. 19.부터 이 사건 소장부분이 위 피고들에게 송달된 날임이 이 법원에 현저한 2022. 3. 2.까지 어음법상 법정이율의 범위에서 원고가 구하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이 판결 선고일인 2024. 10. 16.까지 어음법상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레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법정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을, 원고 C에게 어음금 142,050,000원 및 그중 25,000,000원에 대하여는 만기일인 2021. 11. 30부터, 37,980,000원에 대하여는 만기일인 2021. 12. 20.부터, 39,300,000원에 대하여는 만기일인 2022. 1. 14.부터, 39,770,000원에 대하여는 만기일인 2022. 1. 25.부터 각 이 사건 소장부분이 위 피고들에게 송달된 날임이 이 법원에 현저한 2022. 3. 2.까지 어음법상 법정이율의 범위에서 원고가 구하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이 판결 선고일인 2024. 10. 16.까지 어음법상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레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법정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을, 원고 D에게 어음금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만기일인 2021. 11. 30.부터 이 사건 소장부분이 위 피고들에게 송달된 날임이 이 법원에 현저한 2022. 3. 2.까지 어음법상 법정이율의 범위에서 원고가 구하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이 판결 선고일인 2024. 10. 16.까지 어음법상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레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법정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을, 원고 E에게 어음금 39,490,000원 및 이에 대하여 만기일인 2021. 12. 16.부터 이 사건 소장부분이 위 피고들에게 송달된 날임이 이 법원에 현저한 2022. 3. 2.까지 어음법상 법정이율의 범위에서 원고가 구하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이 판결 선고일인 2024. 10. 16.까지 어음법상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레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법정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고, 피고 G 주식회사는 원고 B에게

어음금 47,044,000원 및 이에 대하여 만기일인 2021. 12. 29.부터 이 사건 소장부분이 위 피고에게 송달된 날임이 이 법원에 현저한 2022. 3. 2.까지 어음법상 법정이율의 범위에서 원고가 구하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이 판결 선고일인 2024. 10. 16.까지 어음법상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레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법정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F에 대한 청구(사해행위취소)에 관한 판단

1) 피보전채권 성립 여부에 관한 판단 원고들이 금전채권인 이 사건 전자어음 채권을 가지고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는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5) 위 피고는 원고들이 이 사건 소제기 당시 및 현 시점까지 어음을 소지하고 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주장하나, 원고들이 이 사건 어음을 소지하고 있음을 인정할 수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위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2) 별지 2 영업권에 대한 사해행위 성립 여부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원고들은 이 부분 매매계약을 사해행위라고 주장하나, 사해행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채무자가 적극재산을 감소시키거나 소극재산을 증가시킴으로써 채무초과상태에 이르거나 이미 채무초과상태에 있는 것을 심화시킴으로써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를 하였을 것을 요구하는데,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당시 별지 2 목록 기재 공장영업권이 재산상 가치가 있는 적극재산임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오히려 갑 제7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위 영업권의 가치는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0원으로 평가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청구는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별지 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대한 사해행위 성립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사해행위 성립여부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앞서 본 기초사실에 갑 제5, 6, 7, 10, 16, 1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더하여 보면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피고 G은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는 채무초과의 상태에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매매계약을 통하여 이 사건 부동산들에 관하여 피고 F 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짐으로써

피고 G의 채무초과상태는 더욱 심화되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 G이 채무초과상태에서 피고 F에게 이 사건 부동산들을 매각한 행위는 원고들을 포함한 피고 G의 일반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며, 채무자인 피고 G의 사해의사는 인정되고, 피고 F의 악의도 추정된다.

①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에 근접한 2022. 11. 10. 피고 G 소유인 이 사건 부동산 및 피고 G 소유의 기계기구 등의 감정평가액은 아래와 같이 총 1,230,360,900원이었고, 그 외에 피고 G이 가지고 있는 적극재산은 확인되지 아니한다.

충북 보은군 V 도로 320㎡, W 공장용지 218㎡	25,280,000원
X 공장용지 7,685 ㎡	996,264,000원6) 청주지방법원 AD 경매사건의 감정평가서상 위 부동산들에 피고 H 소유의 AA 공장용지 2,330㎡를 포함하여 평가된 감정평가금액은 1,231,594,000원으로, 이를 피고 G 소유의 부동산들의 면적비율로 환산하면 996,264,000원[1,231,594,000원 × 9,864㎡ / 전체면적 12,194㎡]이 된다.
Y 공장용지 1,961 ㎡	
X, Z, AA, Y AB동	117,561,700원
X, Z, AA, Y AC동	26,611,200원
공장 내 기계기구 등	64,644,000원7) 감정평가서상 이 사건 매매계약의 대상인 자동차 4대(이 또한 적극재산으로 보인다)에 대한 평가는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적극재산 중 이 부분의 금액산정이 불가하나(올가제10호증의 6, 7, 8 각 세금계산서 상으로는 세금계산서가 발행되어 있기는 하나, 위 금액을 적극재산의 정당한 금액으로 봄에는 무리가 있다), 피고 G이 자인하고 있는 채무액이 적극재산을 훨씬 초과하므로 채무초과 상태에 있음은 다툼의 여지가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적극재산 합계	1,230,360,900원

② 그런데 피고 G은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중소기업은행에 576,000,000원, R 주식회사에 232,929,162원8)의 근저당권부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

③ 피고 G은 채권자들이 피고 G에 대한 채권을 지급할 것을 구하는 소송(대전지방법원 2021가합110862, 이하 '관련소송'이라고 한다)에서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자신이 차량 할부금,

직원 급여 및 퇴직금 채무, 발행한 약속어음채무 등 합계 3,756,205,716원 상당의 채무를 채권자들에 대하여 부담하고 있음을 자인하였고, 피고 G은 2021. 11. 5. 기술보증기금과 642,800,000원 상당의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기도 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 F은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되어 있던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이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를 상회하였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의 적극재산으로서의 가치가 남아있지 아니하여 사해행위가 성립할 수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이 사건 부동산에 중소기업은행, R 주식회사, S, T 명의의 각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던 사실, 중소기업은행 명의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은 576,000,000원, R 주식회사 명의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은 232,929,162원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런데 앞서 본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S 명의의 근저당권의 경우, 이 또한 피고 G의 사해행위로 인하여 설정된 것이므로 취소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는 점, ② T 명의의 근저당권 또한 아래 다) (2)항에서 살펴보듯 허위의 근저당권으로 보이므로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 또한 존재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상당한 점 등에 의하면 위 S, T 명의의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의 경우 이를 이 사건 부동산의 담보가치에서 공제하여야 할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부동산의 적극재산으로서의 가치는 충분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나) 피고의 선의 항변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채권자가 사해행위의 취소로서 수익자를 상대로 채무자와의 법률행위의 취소를 구함과 아울러 전득자를 상대로도 전득행위의 취소를 구함에 있어서, 전득자의 악의라 함은 전득행위 당시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법률행위가 채권자를 해한다는 사실, 즉 사해행위의 객관적 요건을 구비하였다는 것에 대한 인식을 의미한다. 한편 사해행위취소소송에 있어서 채무자의 악의의 점에 대하여는 그 취소를 주장하는 채권자에게 입증책임이 있으나 수익자 또는 전득자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이들이 악의라는 점에 관하여는 입증책임이 채권자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수익자 또는 전득자 자신에게 선의라는 사실을 입증할 책임이 있으며,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할 경우에 그 사해행위 또는

전득행위 당시 수익자 또는 전득자가 선의였음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에 의하여야 하고, 채무자나 수익자의 일방적인 진술이나 제3자의 추측에 불과한 진술 등에만 터 잡아 그 사해행위 또는 전득행위 당시 수익자 또는 전득자가 선의였다고 선뜻 단정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4다237192 판결 등 참조).

(2) 판단

피고 F은 이 사건 매매계약 중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부분은 당시 시세를 초과하는 가격으로 체결되었고, 피고 F이 피고 G의 다른 채권채무관계나 그들의 채무초과 여부에 관하여는 전혀 알지 못하였으므로 선의의 수익자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 F이 악의의 수익자라는 추정을 뒤집고 피고 F이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선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앞서 본 증거들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 F은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이 사건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을 알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위 피고의 선의항변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① 이 사건 매매계약서에서는 매매대금을 3,000,000,000원으로 정하면서, 위 매매대금의 지급 방식을 매매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 채권최고액 합계 2,676,000,000원의 근저당채무를 피고 F이 인수하면서 나머지 매매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하기로 하였고, 추후 경영상 필수적으로 피고 G이 지불해야할 채무(급여 등 일체의 채무)를 대위 변제할 경우에도 잔금 정산에 포함하기로 정하였는바, 위 매매계약서 상으로도 피고 G이 부담하고 있었던 채무액의 범위가 확정적이지 아니하고 예상치 못한 범위까지 증가할 수 있음이 충분히 고려되어 있었다(실제 피고 F은 이 사건 매매계약 직후인 2021. 11. 8. 555,854,686원을 직원 퇴직금 및 MT 운반비 명목으로 대신 지급하기도 하였다).

② 이 사건 매매계약서 상으로는 잔금 266,500,000원의 지급방법에 관하여 이를 피고 F이 피고 G에 대하여 현금으로 지급하기로 특정하였는데, 이와 같은 현금지급 방식은 추후 피고 G의 계좌를 피고 G의 채권자들이 추적하여 압류하는 등의 보전처분을 하는 것을 어렵게끔 하는 것에 해당하는바, 피고 F 또한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추후 매매계약상 잔금 등에 대해 G의 채권자들이 이를 확보하고자 할 것을 예상할 수 있었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③ 아래 다) (2)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 F은 매매대금 중 일부(8억 5천만원)을 T 명의의 근저당권을 말소하는 방식으로 현금 지급하기도 하였는바, 이 또한 앞서 본 바와 같이 채권자들의 보전처분을 어렵게 하는 것이다.

다) 사해행위취소와 원상회복의 방법에 관한 판단

(1) 관련법리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에 관하여 사해행위가 이루어진 경우에 그 사해행위는 부동산의 가액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잔액의 범위 내에서만 성립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사해행위 후 변제 등에 의하여 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된 경우, 사해행위를 취소하여 그 부동산 자체의 회복을 명하는 것은 당초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로 되어 있지 아니하던 부분까지 회복을 명하는 것이 되어 공평에 반하는 결과가 되므로, 그 부동산의 가액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잔액의 한도에서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그 가액의 배상을 구할 수 있을 뿐이고, 그와 같은 가액 산정은 사실심변론 종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1999. 9. 7. 선고 98다41490 판결 참조).

(2) 판단

피고 F은 피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 이후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되어 있었던 근저당권 중 일부를 변제하였으므로 원상회복을 명하는 것은 부당하고 가액배상의 방법 의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가제1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 F이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되어 있던 R의 근저당권(사해행위 당시 피담보채권액 채무 232,929,162원)의 피담보채권을 변제한 후 이를 말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 사해행위 취소로 인한 원상회복은 사해행위 목적물인 부동산의 가액 중에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 등 일반채권자의 공동담보로 제공되지 아니한 금액을 공제한 잔액의 한도에서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그 가액을 배상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한편 사해행위취소의 범위는 취소채권자의 채권액을 한도로 하므로 가액배상의 방법으로 원상회복을 하는 경우 그 배상액 역시 취소채권자의 채권액 범위 내로 제한되는바 결국 사해행위 취소 및 가액배상은 이 사건 변론종결 당시 채권자의 피보전채권액과 사해행위 목적물인 부동산의 공동담보가액을 비교하여 그 중 적은 금액을 한도로 이루어져야 한다.

단, 2021. 9. 29.자로 설정된 T 명의의 근저당권이 이 사건 매매계약 이후 말소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앞서 본 증거들 및 을가제3, 9, 18, 1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T 명의의 근저당권은 이 사건 매매계약이 있기 직전(한달 전)에 설정되었는데, 위와 같은 T 명의의 근저당권의 원인채권 발생사실을 증명할 만한 자료는 이 법원에 전혀 제출된 바 없는 점, ② 피고 F은 T의 배우자인 AF에 대하여 위 근저당권을 해지하는 조건으로 현금으로 8억 5천만 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근저당권 말소를 위한 것이었다면 이를 현금으로 지급할 이유가 전혀 없음에도 이를 현금으로 지급한 점(이는 AE 명의의 근저당권을 말소할 당시에는 2억 원을 피고 F이 AE에 대하여 계좌이체 방식으로 지급한 것과 대조적으로, 위와 같은 거액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③ 실제 위 돈을 수령하였다고 하는 AF(T의 남편)은 피고 G의 감사이자 피고 G의 실질적인 사주인 점, ④ 실제 AF가 지급받은 돈은 모두 T 또는 AF가 아닌, 피고 G의 채무자들에게 이체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실제로 존재한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을 피고가 변제(그 실질은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 지급으로 보이고, 을가 제3호증의 1의 기재에서도 명백하다)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로 인하여 채권자들의 공동담보 가치에 어떠한 변화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바, 이를 이유로 가액배상을 명하여야 한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라) 가액배상의 범위에 관한 판단

(1) 원고들의 채권액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변론종결일 당시를 기준으로 계산한 원고들의 원금 및 이자채권액은 별지 4와 같은바, 이에 따라 계산한 원고별 피보전채권액은 아래와 같다(원 기재 생략).

1	E	39,490,000	6,271,877	45,761,878	45,761,877
2	B	47,044,000	7,387,841	54,431,843	54,431,841
3	C	25,000,000	4,025,342	29,025,345	164,270,604
4	C	37,980,000	6,011,245	43,991,249	
5	C	39,300,000	6,085,578	45,385,583	
6	C	39,770,000	6,098,429	45,868,435	
7	A	36,600,000	5,878,060	42,478,067	60,944,693
8	A	16,000,000	2,466,630	18,466,638	
9	D	20,000,000	3,220,273	23,220,282	23,220,273
합계	348,629,320				

(2) 공동담보가액

살피건대, 중소기업은행, R 주식회사 명의의 근저당권의 경우 이 사건 부동산 뿐만이 아니라 피고 H 소유의 별지 3 부동산목록 기재 각 부동산 또한 그 공동담보로 삼고 있는 것이므로, 피고 H이 변제자대위를 행사할 수 있는 물상보증인이라는 점에 대한 입증이 없는 이상 이 사건 부동산에 의하여 담보되는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은 그 피담보채권액 전부가 아닌, 공동근저당권의 목적으로 된 각 부동산의 가액에 비례하여 공동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안분한 금액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7. 5. 30. 선고 2017다205073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부동산들의 이 사건 매매계약에 근접한 2022. 11. 10.자 감정평가액이 1,165,716,900원(적극재산 합계 1,230,360,900 - 공장 내 기계기구 가액 64,644,000원)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앞서 본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매매계약에 근접한 시점인 2022. 11. 10.자 피고 H 소유의 별지 3 부동산 목록 기재 부동산들의 감정평가액은 아래와 같이 합계 354,552,80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9)

충청북도 보은군 AG 잡종지 319㎡	33,495,000원
충청북도 보은군 AH 잡종지 426㎡	44,730,000원
충청북도 보은군 AI 답 531 ㎡	14,868,000원
충청북도 보은군 AJ 답 104 ㎡	551,200원
충청북도 보은군 AK 답 12㎡ ²	63,600원
충청북도 보은군 AA 공장용지 2,330㎡ ²	235,330,000원
충청북도 보은군 U 전 729 ㎡.	25,515,000원
합계	354,552,800원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이 부담하고 있었던 위 중소기업은행 및 R 주식회사의 피담보채권액은 합계 623,321,848원[중소기업은행 피담보채권액 576,000,000원 × 1,165,716,900원 / (1,165,716,900원 + 354,552,800원) + R 주식회사 피담보채권액 232,929,162원 × 1,165,716,900원 / (1,165,716,900원 + 329,037,800원¹⁰)]이고, 이 사건 부동산의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가액인 1,165,716,900원에서 이를 공제한 금액은 542,395,052원이 된다. 이에 대하여 피고 F은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되어 있었던 AE 명의의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 2억원, T 명의의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 8억 원 또한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T 명의의 근저당권이 허위의 근저당권인 사실 및 AE 명의의 근저당권 또한 별개의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할 것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를 공제하여야 한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소결

그렇다면 원고들은 원고들의 채권액의 합계와 공동담보가액 중 더 적은 원고들의 채권합계의 범위에서 수익자인 피고 F를 상대로 사해행위 취소와 가액배상을 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1999. 9. 7. 선고 98다41490 판결 등 참조),¹¹따라서 이 사건 매매계약은 348,629,320원을 한도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 F은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의 피보전채권액으로서 원고 E에게 45,761,877원, 원고 B에게 54,431,841원, 원고 C에게 164,270,604원, 원고 A에게 60,944,693원, 원고 D에게 23,220,273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상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 G, 피고 I, 피고 F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는 이유 없어 기각하며, 피고 H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이지현

판사이인창

판사황정환

별지

1) 원고들은 피고 G 주식회사, 피고 I에 대하여는 선택적으로 어음금에 기한 청구 또는 불법행위에 기한 청구를 하고 있다.

2) 별지 3 부동산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U 토지는 제외하고 나머지 토지들에만 설정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3) 이는 G 소유의 별지 2 부동산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만 설정되어 있었다.

4) 원고들은 이에 대하여 원고들이 피고 G 또는 I에게 대여금 채권을 가지고 있고,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어음을 지급받은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2023. 11. 1.자 준비서면),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피고들에 대하여 대여금 채권 등의 원인채권을 가지고 있음을 인정하기 어렵다.

5) 이 사건 전자어음은 모두 이 사건 매매계약 이전에 발행된 것이다.

6) 청주지방법원 AD 경매사건의 감정평가서상 위 부동산들에 피고 H 소유의 AA 공장용지 2,330m²를 포함하여 평가된 감정평가금액은 1,231,594,000원으로, 이를 피고 G 소유의 부동산들의 면적비율로 환산하면 996,264,000원[1,231,594,000원 × 9,864m² / 전체면적 12,194m²]이 된다.

7) 감정평가서상 이 사건 매매계약의 대상인 자동차 4대(이 또한 적극재산으로 보인다)에 대한 평가는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적극재산 중 이 부분의 금액산정이 불가하나(을가제10호증의 6, 7, 8 각 세금계산서 상으로는 세금계산서가 발행되어 있기는 하나, 위 금액을 적극재산의 정당한 금액으로 봄에는 무리가 있다), 피고 G이 자인하고 있는 채무액이 적극재산을 훨씬 초과하므로 채무초과 상태에 있음은 다툼의 여지가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8) 2022. 2. 17.자 기준으로,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의 금액 또한 이와 유사할 것으로 보인다.

9) 공장근저당권 또한 설정되어 있으나, 공장근저당권의 담보물건 및 담보가치를 알 수 있는 자료가 이 법원에 현출된 바 없다.

10) U 전 729m'에 대하여는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였다.

11) 사해행위인 계약 전부의 취소와 부동산 자체의 반환을 구하는 청구취지 속에는 위와 같이 일부취소를 하여야 할 경우 그 일부취소와 가액배상을 구하는 취지도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청구취지의 변경이 없더라도 바로 가액반환을 명할 수 있다는 취지의 대법원 2001. 6. 12. 선고 99다20612 판결 등 참조.